

「사무분장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6. 1. 26. 개정 판 (시행 2025. 12. 15.) → 2026. 3. 9. 개정 판 (시행 2026. 3. 9.)

바뀜 11 · 신설 3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65/compare?from=1723&to=1730>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1:13:41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외국제처장 직인 관리 2.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3.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홍보 5.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6.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7. 잠재기부자 발굴 8.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9.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10.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1.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2.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3.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4.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5.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6.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7. 총동문화 지원 업무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2.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홍보 4.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5.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6. 잠재기부자 발굴 7.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8.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9.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0.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1.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2.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3.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4.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5.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6. 총동문화 지원 업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20조(AI융합교육센터) AI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제25조(사업본부) 사업본부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3-02-13)	제25조
제25조의2(지능형반도체사업단)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제25조의2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	제26조
제27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
제47조(커뮤니케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공식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10.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1.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2.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3.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4.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5. 홍보 기록물 관리 16.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7.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7조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개정 2025-01-06> 국제교육원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u>Admissions</u>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7조의2(국제처) <개정 2025-01-06>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u>Engagement</u>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2023-09-04〉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제62조(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2(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62조에서 48조의2로 이동 2026.3.9.]
제60조(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11-10〉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8조의3(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50조의2(수익사업팀) 수익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 수익사업 기획 및 운영 2. 수익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수익사업 성과관리 4. 수익사업 관련 계약 및 법무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0조의2
<신 설>	제60조
<신 설>	제62조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2.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홍보
4.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5.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6. 잠재기부자 발굴
7.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8.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9.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0.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1.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 12.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 13.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 14.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 15.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 16. 총동문회 지원 업무
-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20조의 제목 "AI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AI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제26조의 제목 "중독케어사업단"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캠퍼스사업단"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국제처)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2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62조에서 48조의2로 이동 2026.3.9.]

제60조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